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(안 제16조 별표 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과태료 규정(제34조 제1항 제17호)를 수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를 수정(안 제16조 별표 2)

※ 근거법령 : 개정 법률(제21835호) 제32조 제2항 제4호, 제34조 제1항 제17호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법 제18조(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)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거짓 표시를 제외하고 미 표시한 경우만 적용

* 거짓 표시는 벌칙(개정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)으로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개정 법률과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일치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